

2019년도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4. 1.(월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1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00건(안전번호 제2019-5337호~619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포털 블로그 내 악보 파일 게시물 1개 안건(제2019-5336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명령 청구 계정 768건(안전번호 제2019-2408호~3175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5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8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61개 안건은 부결(10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됨)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3페이지의 '온라인서비스명', 5페이지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공개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온라인서비스명, 저작물명, 저작권자명은 비공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3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온라인서비스명은 비공개 처리하고, 5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저작물명, 저작권자는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5336~619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000건임
안전번호 제2019-5336호는 게시자가 블로그에서 뮤지컬 악보파일(PDF파일)을 첨부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게시자는 연기학원 광고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 검색화면을 보여주면서)해당 뮤지컬 악보의 복제권, 전송권은 위 단체의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 악보와 악보 판매 사이트의 악보를 비교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는 합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보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악보와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본 건은 관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5336호 악보파일(PDF파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뮤지컬 악보파일(PDF파일)에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악보를 제시하면서)작곡가는 1944년생이고 프랑스 국적으로 현재 생존해 있으며, 프랑스 국적의 작사가 또한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견 없음
- A 위원 : 이견 없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5336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가 합법 시장의 판매용 악보와 그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악보가 불법복제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이며 저작권법위반죄가 기본적으로 친고죄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5337~6190호는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음악 저작물의 경우 하나의 게시물에서 압축파일로 다수의 음원파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안전번호 제2019-6165호의 경우 저작물명이 가수 바이브가 부른 '가을 타나 봐'로 되어 있어 마치 1곡의 음원파일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게시물은 100개의 최신 인기 대중가요 음원파

일을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 다른 의견 없음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5337~6190호는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의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336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나머지 안전번호 제2019-5337호~619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408~3175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관해 중복으로 청구한 5개 안전,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1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8개 안전(10개 안전은 부결사유가 중복됨)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8.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